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계약학과 제도 개선방안



2009. 2. 19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계약학과 제도 개선방안

I. 추진배경

1. 목적 및 추진배경

- 산업체 수요에 의한 대학의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
 - 고등교육 단계에서 Work to school 체제를 정규 교육과정에 내재화함으로써 실용적 인재개발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 산업체 등의 수요에 대한 대학의 대응성 제고
- 국정과제 선정·추진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계약학과 확대·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율 및 교원·교육장 설치
규제 등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

- 대학자율화 과제와 연계하여 대학 직업교육체제의 유연화 촉진

2. '08년 추진현황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기획재정부)과 연계 추진('08. 8월~)
 -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방안, 고용보험기금 지원방안 등 협의
- 현황조사 정책연구(“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방안”)
 - 계약학과 현황 설문조사 : 4년제 및 2년제 대학(교) 조사 (7.31~8.6)
 - 계약학과 관계자 워크숍 및 의견수렴 : 산학협력단 관계자 88명 참석 (8.14)

- 계약학과 운영요령 시안 의견수렴(12. 17~26)

II. 계약학과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유형 및 현황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자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계약학과)
 - i) 채용조건형 : 졸업 후 해당 산업체 취업을 전제로 학생을 모집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하며, 산업체가 교육비용의 전부를 부담
 - * '08년 현재 3개교 4개학과 375명 (전문대 33명, 4년제 342명)
 - ii) 재교육형 : 산업체가 재직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하여 대학에 학과를 설치·운영하며, 산업체가 교육비용을 50% 이상 부담
 - * '08년 현재 43개교 148개학과 4,992명 (전문대 12교 2,004명, 4년제 30교 2,988명)

2. 문제점

- 계약학과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 등의 참여가 미흡
- 서비스 분야에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참여가 저조함
 - 계약학과 재학기간 동안의 인력수급 차질
 - 교육비의 전부 또는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부담
-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대학과 기업의 혼선
 - 계약학과 설치·운영 장소, 운영경비의 부담자, 계약사항 등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형식적인 제도 운영 우려

Ⅲ. 계약학과 제도 개선방안

계약학과 제도 정립방향

인력 수요자(사업주) 주도형으로 직업교육 체질개선

- 산업체 내 계약학과 설치 허용
- 산업체의 시설·장비 등 제공 기여 촉진
-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인센티브)

계약학과 설치·운영 관련 규제 완화

- 계약학과 전임교원·교사·교지 확보 자율화
- 계약학과 설치 권역 확대

설치·운영 기준 정립

- 계약학과 운영요령 마련
- 회계관리 기준 마련
- 계약학과 정보공시

1. 계약학과 설치·운영 대상

- 설치·운영 주체 :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2년제 및 4년제)
- 산업체 등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의 경우)
 - 사업주 단체나 협회 등
- : 회원 기업의 근로자(채용예정자) 대상 계약학과 설치·운영은 비용부담 및

채용조건 등의 안정성을 위하여 해당 기업과 3자 계약에 한하여 가능

< 3자 계약의 유형 >

- ① “사업주 단체·협회-기업-대학” :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 국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가 관련 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 계약학과 입학자격

- ‘산업체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피고용인 (재교육형)
- ‘산업체 등’에 채용예정자 (채용조건형)

※ 채용예정자의 경우, 해당 산업체의 추천 또는 입학승인을 받은 자

2. 기업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등의 학비부담 완화

- 현행 100% → 50%~100%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완화 ('09년 이후 산촉법 시행령 제7조⑥ 개정 추진)

- 학생의 동의 하에 학생의 학비부담 허용(50% 미만)

※ 취업조건, 취업거부 등의 판단기준, 상환 등 세부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함

○ 기업 소유 시설·기자재 등의 사용, 학생의 교통편의 제공 등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현물비용을 산업체가 부담하는 학비의 일부로 인정

- 대학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현물비용 인정방안 마련

○ 기업 내 시설·기자재를 활용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허용

-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자의 학과 접근성 제고를 통한 근무손실 경감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기업 소유의 시설 등에 계약학과 설치·운영 허용

※ 관련부처·지자체·공공기관·사업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3자계약

→ 계약에 참여한 기관이 소유한 시설에 교육장 설치·운영 가능

-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대상에 ‘맞춤형 교육비’ 신설
 -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대상대학 확대(지방대학→모든 대학)
 -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15%→2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

3. 대학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교사·교지·전임교원 확보 자율화
 -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와 같이 편제정원에서 계약학과 학생수를 제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원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5호)은 교사·교지·전임교원 등의 확보기준이 여타 대학과 다른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학과의 질적 담보를 위하여 교원확보기준 산정 시, 계약학과 학생 수 포함(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 사이버대학 전임교원 확보기준 : 학생 200명당 1명
 - 계약학과 설치·운영 ‘권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확대
 - 동일한 광역단위 행정구역 내에 대학과 산업체 등이 위치하되,
 -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산업체 등의 직원이 근무의 손실없이 정상적인 학업에 참여하는 등 긴밀한 산학협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리까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위치한 학교·산업체 등의 어려움 경감
- ⇒ 시·도 단위 또는 학교와 산업체 간의 거리가 100 km 이내
- ※ 본사와 지사 등이 복수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가, 대학이 소재하는 권역 내의 지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계약에 명시하는 경우, ‘권역 내’로 간주

※ 계약학과와 산업체 위탁교육 권역제한 비교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계약이 가능한 학교-산업체 간 거리 ('권역'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시·도 단위 또는 100km 이내 * '권역 외' 계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제한 없음
학교 밖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 내'에서 학교 또는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학교법인 시설 ⇒ 동일 시·도 또는 100km 이내 * 서울·경기·인천은 100km 적용배제 ② 산업체 시설 ⇒ 제한없음

4.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촉진

-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인력양성사업에 의한 재정지원 연계
 - 경직적인 대학교육체제가 새로운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독자적인 인력양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
 - 해당 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대학 간의 3자 계약을 통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촉진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에 산업체 등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보 협의(노동부) 추진

5.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내실화

- 계약학과 운영 경비 부담방법 개선
 - 학생, 산업체,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분담
 - : 산업체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장학금(또는 학비감면)으로 처리하거나, 대학자체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학의 열악한 재정을 악화시켜 기존 학생들의 불이익 초래
 - ※ 장학금은 학생 부담 납부금에 대하여 우선 수여해야 함

- 학생 부담을 제외한 운영경비는 산업체의 부담금과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금으로 산정
 - ※ 산업체 등이 시설·장비·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물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가 부담한 학비의 일부로 인정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인력양성을 위하여 재정지원한 경우, 해당가액만큼 산업체 등의 부담경감 가능
- 계약학과 설치 계약 포함사항
 -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 학칙 기재사항 (산촉법 시행령 제7조② 1~9호)
 - 산업체 등과의 계약사항에 의거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② 1호내지 9호의 주요사항을 학칙에 기재
 - ※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정원, 경비 및 부담금, 학생 납부금,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학생의 보호
 -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가칭)‘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가능
- 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대학정보공시제)

- 매년 9월 계약학과 명칭, 재학생수 및 계약 산업체 등의 현황을 제출

IV. 관련 법령정비 등

1. 학사운영 및 회계관리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수업은 산측법 기타 고등교육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 시 산업체 등이 요구·의뢰한 내용을 반영
 -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학칙·학사관련 규정에 따라 졸업 이수학점의 20% 범위 내 인정할 수 있음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 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현장 학습 등)을 반영하여 학칙·학사규정으로 정하되, 출석수업 50% 이상
 - ※ 원격대학의 경우, 출석수업과 현장수업을 합하여 20% 이상으로 적용
- 계약학과는 정규 학위가 수여되고, 등록금이 징수되므로, 그 회계관리는 교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공립대학(교)는 국고 귀속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음

2. 법적 근거 정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등에 위반한 학교(장) 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
-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가칭)‘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제정
 - 전임교원 확보 자율화, 학교 밖 계약학과 설치 자율화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된 이후(‘09. 3 예상)부터 적용
 - 기존 계약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요령”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 계약체결없이 협약 등으로 운영 중인 경우, '09 하반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
- 채용조건형에서 학생의 학비부담은 시행령 개정 이후 “요령” 개정 추진

【붙임 1】

계약학과 운영요령 시안 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기간 : '08. 12. 17(수) ~ 12. 26(금)
- 대상 : 전국 2년제 및 4년제 대학,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부내 관련부서
- 제출된 주요의견 및 검토
 - 원격대학 포함 및 출석수업 비율
 - 고등교육법 제2조5호의 대학으로서 포함시키되, 원격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확보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200명당 1명)
 -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명시(지식정보기반과)
 -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 및 현장수업을 20% 이상으로 비율조정
 - 대학-산업체 간 거리제한
 - 기업의 근무손실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일과시간 이후 수업 접근성 확보를 통한 계약학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동일 시도 또는 100km 이내'를 유지
 - 주요 대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본사가 지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운영
 - * 타 지역에 위치한 본사가 해당지역에 위치한 지사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간주

【붙임 2】

계약학과 운영요령(안)

제정 2008년 12 월 00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산업대학교·일반대학교·원격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이하 “학과”라 한다)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②계약학과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대학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 km 이내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

②계약학과는 제15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와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③계약학과와 설치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

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7조(학칙 기재사항) ①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명칭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②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학사관련 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계약학과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격대학의 계약학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학자격) ①계약학과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박사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및 다음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에만 두되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전의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
2. 법에 의하여 제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공트랙의 운영 개설은 기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과목의 이수율 통해 전공이수 자격을 부여한다. 학생 부담금은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의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제10조에 의한다.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 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제3조제1항의 채용조건형인 경우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제3조제2항의 재교육형인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납부금을 일률적으로 대학의 자체 장학금 등으로 감면처리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이 전체 운영경비의 100분의 50을 넘게 되는 경우, 제3항을 위배한 것으로 본다.

⑤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의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의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 제2항 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①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현장학습 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5호의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수업과 현장수업을 합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등의 현황을 매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제 4 장 회계 관리

제17조(회계 관리)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5조의 3차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 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체 등의 현물부담금 등) 대학과 산업체 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비 등의 적정가액을 산정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계약학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학교(장)등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및 행·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4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기존 계약에 의하여 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갱신이 필요한 때까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명시적인 계약 체결없이 협약 또는 학칙에 의하여 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대하여는 2009년 8월 이후에 개강하는 학기를 위한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